

## 용인시 시민의날 조례

제정 1996. 3. 1 조례 제 10호  
개정 2000. 1. 17 조례 제242호  
2005. 6. 30 조례 제593호  
2005. 10. 5 조례 제632호

제1조(목적) 용인시 시민의 날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郷심을 고취시켜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시민의 날 설정) 매년 9월 30일을 용인시 시민의 날(이하 “시민의 날”이라 한다)로 정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3조(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) 시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.

1. 전야제 축하공연행사
2. 체육행사
3. 문화예술행사
4.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행사

[본조신설 2005. 6. 30]

제4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5. 6. 30>

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시민의 날은 종전대로 9월 30일 실시한다.

부칙 <2000. 1. 1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시민의날 조례

부칙 <2005. 6. 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32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